

의안번호	2203666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4. 10. 7.
추 계 번호	24F3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1.3조원, 2031년 1.2조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1조원(연평균 2.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28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1년까지 발생함
 - 개정안에는 자립준비청년 고용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등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의미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조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8)	-1.3	-2.5	-3.7	-2.4	-1.2	-11.1	-2.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및 공제율 청년등 상시근로자: (현행)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기업규모별</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 <tr> <td>청년 등 상시근로자</td><td>1,450 (1,550)</td><td>800</td><td>400</td></tr> <tr> <td>일반 상시근로자</td><td>850 (950)</td><td>450</td><td>-</td></tr> </table>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 (1,550)	800	400	일반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 (1,550)	800	400												
일반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년간 공제혜택을 반영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

- t 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가 $(t+1)$ 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t+1)$ 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이 충족된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여 각 연도의 공제실적을 신고연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지속해서 감면받으며, 상시근로자수의 전년대비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은 없다고 가정

□ 2023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계
 - －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통합
 - －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선택적용이 가능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9~2023년 신고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단,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9~202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 (2021년 기준)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감률 전망 (2023.10.)¹⁾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이 중 기본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청년 등 상시근로자: (현행) 청년(19~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추가

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3.10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등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의미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7.12.31.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추가	1,450 (1,550)	800	400
일반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청년(19~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개정안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6조 등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
2) ()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금액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9년 7,317억원에서 2023년 2조 9,339억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

[표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신고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계	7,317	12,812	17,960	24,166	29,339
소득세	1,972	4,283	6,336	8,898	11,191
법인세	5,345	8,529	11,625	15,268	18,148
- 중소기업	3,784	6,212	9,002	11,950	14,027
- 중견기업	846	1,300	1,491	2,061	2,396
- 대기업	714	1,017	1,131	1,257	1,72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고기준 실적을 발생연도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후, 제도변화 및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현재 세법개정 이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만 추계에 활용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2023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1년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공제액과 2022년에 신고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3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발생연도
(단위: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¹⁾	중소·중견	A_{21}	A_{21}	A_{21}		
	대기업	B_{21}	B_{21}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		A_{22}	A_{22}	A_{22}	
	대기업		B_{22}	B_{22}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			A_{23}	A_{23}	A_{23}
	대기업			B_{23}	B_{23}	
계		$A_{21} + B_{21}$	$A_{21} + B_{21} + A_{22} + B_{22}$	$A_{21} + A_{22} + B_{22} + A_{23} + B_{23}$	$A_{22} + A_{23} + B_{23}$	A_{23}

주: 1. A는 중소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1) 2021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0년 고용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제도변화와 취업자수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신규 공제액 추정
 -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근로자 유형별(청년 등 상시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20~31.8% 변동되었으며, 2024년 신고분(2023년 귀속)부터는 변동된 공제액이 반영됨

[표 5]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로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 변동 추이

(단위: 만원,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1,100→1,450 (31.8)	1,300→1,550 (19.2)	800→800 (0.0)	900→800 (△11.1)	400→400 (0.0)	500→400 (△20.0)
일반 상시근로자	700→850 (21.4)	770→950 (23.4)	450→450 (0.0)	450→450 (0.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안은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의 변동률(%)

- 공제실적의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2023년 취업자수 증가율(1.2%)만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신규 공제액은 2026~2028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2023.10)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징수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t년도(신고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t+2)년도까지, 대기업은 (t+1)년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19~2023년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하면, 2023년 신규 발생한 공제실적은 1조 1,194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19년부터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 없이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연도별·기업규모별로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 추계

[표 6]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발생연도별 신규 공제액 추정

(단위: 억원)

발생연도 (신고연도 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317	5,495	5,863	13,111	11,194
소득세	1,972	2,311	2,053	4,534	4,604
법인세	5,345	3,184	3,810	8,577	6,590
－ 중소기업	3,784	2,428	2,790	6,732	4,504
－ 중견기업	846	454	192	1,416	789
－ 대기업	714	303	828	429	1,29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을 바탕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총 1조 3,564억원으로 추정

○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구분

－ 지역별 구분은 2019~2022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3년 이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구분

※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²⁾

[표 7] 2023년 신규 공제액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구분 추정치

(단위: 억원, %)

	2023년 신규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
		구분	비중(B)	구분	비중(C)	
소득세	4,6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702
				일반	47.2	1,520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30
				일반	47.2	652
법인세 (중소기업)	4,5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665
				일반	47.2	1,487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14
				일반	47.2	638

2)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2023년 신규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
		구분	비중(B)	구분	비중(C)	
법인세 (중견기업)	789	수도권	72.3	청년 등	59.9	342
				일반	40.1	229
		비수도권	27.7	청년 등	59.9	131
				일반	40.1	87
법인세 (대기업)	1,297	수도권	72.3	청년 등	100.0	938
		비수도권	27.7	청년 등	100.0	359
계						11,194

- 2023년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 각각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 및 취업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1조 3,564억원 수준으로 추정
- －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는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로 △20~31.8%를,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실적치인 1.2% 적용

[표 8]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23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A)	제도변화 (B)	'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A×B×101.2%)	기업규모별 구분
소득세	수도권	청년 등	1,702	31.8	2,271	5,833
		일반	1,520	21.4	1,868	
	비수도권	청년 등	730	19.2	881	
		일반	652	23.4	814	
법인세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665	31.8	2,222	5,707
		일반	1,487	21.4	1,828	
	비수도권	청년 등	714	19.2	861	
		일반	638	23.4	796	
법인세 (중견기업)	수도권	청년 등	342	0.0	346	784
		일반	229	0.0	231	
	비수도권	청년 등	131	△11.1	118	
		일반	87	0.0	88	
법인세 (대기업)	수도권	청년 등	938	0.0	949	1,240
	비수도권	청년 등	359	△20.0	290	
계					13,564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치 (2023.10.)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

-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28년까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신고기준)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공제액을 추계
 - 2026~2030년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NABO, 2023.10)은 0.1~0.5% 수준으로, 공제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취업자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9] 2027~2031년(신고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신고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5,956	5,974	5,992	6,004	6,010
법인세 (중소기업)	5,828	5,845	5,863	5,875	5,880
법인세 (중견기업)	800	803	805	807	807
법인세 (대기업)	1,266	1,270	1,274	1,276	1,277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NABO, 2023.10)	0.5	0.3	0.3	0.2	0.1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3조원, 2031년 1.2조원 등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표 10]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전망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26년 신규 기업	5,956	5,956	5,956		
- 중소·중견기업	5,828	5,828	5,828		
- 대기업	800	800			
2027년 신규 기업		5,974	5,974	5,974	
- 중소·중견기업		5,845	5,845	5,845	
- 대기업		803	803		
2028년 신규 기업			5,992	5,992	5,992
- 중소·중견기업			5,863	5,863	5,863
- 대기업			805	805	
계	12,584	25,207	37,066	24,480	11,855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1.3조원, 2031년 1.2조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1조원(연평균 2.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28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1년까지 발생함
 - 개정안에는 자립준비청년 고용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등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의미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조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9조의8)	-1.3	-2.5	-3.7	-2.4	-1.2	-11.1	-2.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